

2024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

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,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 : 주택 분야 10개사, 단지 분야 7개사 (사업자번호 순)

주택 분야	- (주)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(124-81-52860) - (주)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(132-81-12608) - (주)건축사사무소광장 (135-81-23685) - (주)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(211-81-60214) -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(211-86-20779) -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(220-81-71530) - (주)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(220-87-01360) -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(주) (301-81-31079) -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(306-81-09266) - 주식회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(408-81-42391)
단지 분야	-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(129-81-20591) -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 (138-81-00094) - 주식회사 이산 (138-81-01278) -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(211-81-08009) - 주식회사 삼안 (211-81-25425) -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(229-81-07980) -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(609-81-14412)

2.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간

- 본 공지 이후 ~ 신규 적용방안 공지전 까지

* 'LH혁신방안' 관련하여, 업체선정 이관기관 협의 등에 따라 '수주편중 완화 방안 변경(추가)' 공지 예정

3. 제한내용 : 분야별 해당 사업자간(기업집단 포함)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

* 단, 단지분야 중 조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

** 기업집단 :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의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모두 포함 (세부내용 개별 입찰공고문 참조)

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관리처장